

제259회 임시회
'07. 4. 24(화)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문화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2007. 4. 24.
건설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7년 4월 9일
 - 회부일자 : 2007년 4월 11일
- 상정일자 :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7. 4. 17 :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 영 화)

- 제안 이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규정」을 준용하고,
 - 충청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및 조직의 명칭, 분장사무에 관한사항을 부합시키고자 일부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준용(안 제2조)
 - “상시대비체제” → “상시대비단계”
 - “사전대비체제” → “사전대비단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규정」 준용(안 제9조)
 - “자연·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 “준비단계에서는 상황에 따라”
- 충청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의 명칭 조정(안 제4조)
 - 기획관리실장 → 정책관리실장
 - 국장(소방본부장 포함) → 실·국·본부장(소방본부장 포함)
 - 과장 → 실·과·팀장
-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대책반 명칭 조정
 - 경제통상반 → 경제투자반
 - 기구의 신설·조정 → 균형발전반
 - 복지환경반 → 복지여성반
 - 문화관광반 → 문화관광환경반
 - 건설교통반 → 건설재난관리반

3. 검토보고 요지

(건설문화전문위원 유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규정」을 준용함은 물론, 충청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및 조직의 명칭과 분장사무에 관한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를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2조제5호가목중 “상시대비체제”를 “상시대비단계”로, 나목중 “사전대비체제”를 “사전대비단계”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관리실장”으로, 제3호중 “국장(소방본부장 포함)”을 “실·국·본부장(소방본부장 포함)”으로, 제4호중 “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 별표 1
2. 기반재난의 경우 재난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무반은 운영단계별로 국가 기반재난 지역안전관리계획에 의거 편성·운영한다.
3. 재난유형에 따른 사전대비단계에서는 실·국·본부대책반장을, 비상·대응단계에서는 차장을 책임관으로 하여 실무반을 운영한다.

제4조제4항중 “재난업무 담당 과장”을 “재난관리팀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과장”을 “실·과·팀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단서중 “자연·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 단계에서는”을 “준비단계에서는 상황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재난업무담당과·팀장”을 “지역안전팀장”으로, “재난업무담당”을 “안전점검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1]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제4조제3항 편원)

본 부 장 : 도 지 사

차 장 : 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 : 정책관리실장

총재관 : 소년업무실·국·본부장

담당관 : 소년업무담당관·담당

실·국·본부 대역반

상동순차역	총괄조정관	총 보 관	지리정보실	정책지원실	운영지원실	총 조 직	강원도지사	특기지원실	문화관광실	구조구급반
담당직책인	담당실장	공보관	지리정보담당	정책지원부장	운영지원부장	행정본부장	강원도청장	특기지원부장	문화관광부장	소방본부장
1. 상황보고· 접수·전파 자료 등 수신 조정 2. 화재발생 진상 파악 발생 지역 3. 상황조사 조사장제 4. 화재 원인 조사 5. 화재 원인 조사 6. 화재 원인 조사	1. 상황발령 수신 등 2. 화재발생 조사 3. 기상상황 등 재난 분석 4. 피해조사 5. 상황조사 6. 화재 원인 조사 7. 화재 원인 조사 8. 화재 원인 조사 9. 화재 원인 조사 10. 화재 원인 조사	1. 화재상황 보고 2. 상황발령 조정 3. 보도자료 작성 4. 언론·방송 협력 5. 언론 인터뷰 조정 6. 재난 상황 홍보 7. 재난 상황 홍보 8. 재난 상황 홍보 9. 재난 상황 홍보 10. 재난 상황 홍보	1. 재난구조 관련 정책 2. 재난구조 관련 정책 3. 재난구조 관련 정책 4. 재난구조 관련 정책 5. 재난구조 관련 정책 6. 재난구조 관련 정책 7. 재난구조 관련 정책 8. 재난구조 관련 정책 9. 재난구조 관련 정책 10. 재난구조 관련 정책	1. 기획· 운영 2. 기획· 운영 3. 기획· 운영 4. 기획· 운영 5. 기획· 운영 6. 기획· 운영 7. 기획· 운영 8. 기획· 운영 9. 기획· 운영 10. 기획· 운영	1. 운영지원 2. 운영지원 3. 운영지원 4. 운영지원 5. 운영지원 6. 운영지원 7. 운영지원 8. 운영지원 9. 운영지원 10. 운영지원	1. 재난관리 2. 재난관리 3. 재난관리 4. 재난관리 5. 재난관리 6. 재난관리 7. 재난관리 8. 재난관리 9. 재난관리 10. 재난관리	1. 도·지청 2. 도·지청 3. 도·지청 4. 도·지청 5. 도·지청 6. 도·지청 7. 도·지청 8. 도·지청 9. 도·지청 10. 도·지청	1. 특기지원 2. 특기지원 3. 특기지원 4. 특기지원 5. 특기지원 6. 특기지원 7. 특기지원 8. 특기지원 9. 특기지원 10. 특기지원	1. 문화·관광 2. 문화·관광 3. 문화·관광 4. 문화·관광 5. 문화·관광 6. 문화·관광 7. 문화·관광 8. 문화·관광 9. 문화·관광 10. 문화·관광	1. 화재예방· 진상조사 2. 화재예방· 진상조사 3. 화재예방· 진상조사 4. 화재예방· 진상조사 5. 화재예방· 진상조사 6. 화재예방· 진상조사 7. 화재예방· 진상조사 8. 화재예방· 진상조사 9. 화재예방· 진상조사 10. 화재예방· 진상조사

<근무방법>

1. 실·국·본부 주두 실·과·팀장은 대역반장을 보좌한다.
2. 근무반별 편성은 2개조로 편성 24시간 교대로 근무한다.
(사전대비단계 30명, 비상단계 40명)
3. 실·국·본부 근무자를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각 실·국·본부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재난 상황에 따라 일부 특직반을 소집하고 그 외에는 각 부서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4. 출근시간 확인자는 종합상황반에 소속되어 상황실상 통제 하에 근무한다.

[별표 2]

자연·인적재난 위임전결 사항(제6조 관련)

업 무 내 용	본부장	전 결 권 자			
		차 장	총 관 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본부조직 및 운영	5급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각 체제의 개시 및 해제결정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실무반 복무 지도감독				○
	본부 당직명령 및 당직근무 상대 지도점검				○
	재해일지 기록배치				○
	본부 물품관리 운용				○
방재교육 또는 훈련계획수립 및 실시지도감독			○		
시·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감독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등				○	
기상특보 발령에 대한조치	홍수 등 정보 발령시				○
	홍수주의보 발령시				○
	기상주의보 발령시				○
방재용자재의 수송지휘에 관한 사항				○	
수난구조 사 항	헬기 등 주요장비 지원요청 및 협의			○	
	수난구조 상황과약				○
군 지 원 사 항	군장비등 지원요청 및 협의			○	
	군장비 지원사항 과약				○
구호활동 사 항	구호활동 지원요청 및 협의				○
	구호활동 상황 과약				○
통신망에 관한사항	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
	통신시설 수리 및 보수				○
피해종합 책	기상자료 수집				○
	피해상황 자료수집				○
	일일 재해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
	지방조사반 현지파견 결정			○	
	피해액 확정 (단, 우심시군이 없을 경우 통제관 전결)	○			
복구계획 수립 (단, 우심시군이 없을 경우 통제관 전결)	○				
복구사업 지도 감독				○	
지시 및 기준방침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					○
조회, 협의회신 및 조사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보고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별표 3]

기반체계보호 전결 사항(제6조 관련)

업무 내용	본부장 결재	전 결 권 자			
		차장	총 괄 조 장 관	부 계 관	담 당 관
충청북도 대책본부 조 직 및 운 영	4급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5급이하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실무반 및 근무자 복무 지도·감독				○
	상황일지 기록 비치				○
	본부 물품관리 운용				○
충청북도 대책본부 회의운영	본부 운영비 내시 및 배정요구			○	
	본부 급량비 등 지출요구				○
	회의안건 작성 등 운영		○		
재난 교육계획 수립, 실시 및 지도·감독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감독				○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	
상황단계별 조 치	예방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대비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대응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상 황 관 리	수습·복구단계별 조치사항		○		
	재난상황 수집전과 대규모 발생 예측·분석				○
군 지 원 사	군 장비 및 인력지원 요청 및 협의				○
	군 장비 및 인력지원사항 파악				○
공 권 력 위 원 사	대응·수습에 따른 지휘에 관한 사항		○		
	공권력 지원요청 및 협의 병역 및 장비 지원사항 파악	○			
동 중 합 대 책	지원상황 자료수집				○
	지원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
	현장지원단 구성 및 현지 파견		○		
	현장지원단 활동상황 파악				○
	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 동원사항 파악				○
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의 동원				○	
불법 유형별 대응방안 분석·조치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략)</p> <p>1. ~ 4. (생략)</p> <p>5. (생략)</p> <p>가. <u>상시대비체제</u>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p> <p>나. <u>사전대비체제</u>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가. <u>상시대비단계</u> : -----</p> <p>-----</p> <p>-----</p> <p>-----</p> <p>나. <u>사전대비단계</u> : -----</p> <p>-----</p> <p>-----</p>
<p>제4조(구성 및 임무) ①(생략)</p> <p>②(생략)</p> <p>1. (생략)</p> <p>2. 총괄조정관 : <u>기획관리실장</u>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함.</p> <p>3. 통제관은 자연·인적재난, 기반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u>국장(소방본부장 포함)</u>이 되며, 차장 및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p> <p>4. 담당관은 해당 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u>과장</u>이 되며, 소관 업무에 대한 통제관을 보좌한다.</p> <p>③(생략)</p> <p>1. <u>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 기준 : 별표 1</u></p> <p>2. <u>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 기준 : 별표 2</u></p>	<p>제4조(구성 및 임무) ①(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정책관리실장</u>-----</p> <p>-----</p> <p>3.-----</p> <p>----- 실</p> <p>· <u>국·본부장(소방본부장 포함)</u>-----</p> <p>-----.</p> <p>4 -----</p> <p>----- <u>실·과·팀장</u>-----</p> <p>-----</p> <p>③(현행과 같음)</p> <p><삭 제></p> <p>1. <u>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 별표 1</u></p>

현행	개정안
<p>3. 기반재난의 경우 재난단계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무반은 운영단계별로 국가 기반재난 지역안전관리계획에 의거 편성·운영한다.</p>	<p>2. (종전의 3호와 같음)</p>
<p>4. 재난유형에 따른 사전대비체제에서는 실국대책반장을, 비상·대응단계에서는 차장을 책임관으로 하여 실무반을 운영한다.</p>	<p>3. ----- 사전대비단계----- -- 실·국·본부대책반장----- -----</p>
<p>④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고, 기반재난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기반보호총괄관이 되며 기반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p>	<p>④----- ----- 재난관리팀장----- ----- -----</p>
<p>제6조(위임전결) ①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자연·인적재난 관련해서는 별표 3과 같고 기반재난관련해서는 별표 4와 같다.</p>	<p>제6조(위임전결) ①----- ----- ----- 별표 2----- ----- 별표 3----- -----</p>
<p>제8조(상황판단회의)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석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8조(상황판단회의) ①(현행과 같음) ②----- ----- 실 ·과·팀장, ----- ----- -----</p>
<p>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생략)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p>	<p>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현행과 같음) ②----- ----- -----</p>

현행	개정안
<p>용·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u>자연·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u></p>	<p>----- ----- ----- ----- 준비단계에서는 상황에 따라 ----- ----- ----- -----</p>
<p>③ ~ ④(생략)</p>	<p>③ ~ ④(현행과 같음)</p>
<p>[별표 1] - <u>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u></p>	<p><삭 제></p>
<p>[별표 2] - <u>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u></p>	<p>[별표 1] - <u>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제4조제3항 관련)</u></p>
<p>[별표 3] - <u>자연·인적재난 위임전결 사항</u></p>	<p>[별표 2] (중건의 별표 3과 같음)</p>
<p>[별표 4] - <u>기반체계보호 전결 사항</u></p>	<p>[별표 3] (중건의 별표 4와 같음)</p>

관계법령 발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준비단계”라 함은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목의 단계를 말한다.

- 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인적재난의 발생우려가 있는 단계시할 수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규정

제8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③ 중앙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진계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단계에서는 상황에 따라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정책관리실에 두는 담당관) ①정책관리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혁신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을 둔다.

제7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을 둔다.

제8조(경제투자본부에 두는 팀) ①경제투자본부에 경제정책팀, 투자유치팀, 전략산업팀, 통상외교팀, 기업지원팀, 자원관리팀을 둔다.

제9조(균형발전본부에 두는 팀) ①균형발전본부에 균형정책팀, 지역개발팀, 신도실건설팀, 교통물류팀, 건축팀을 둔다.

제10조(농정본부에 두는 팀) ①농정본부에 농업정책팀, 농산지원팀, 원예유통팀, 축산팀, 산림녹지팀을 둔다.

제11조(건설재난관리본부에 두는 팀) ①건설재난관리본부에 건설정책팀, 하천관리팀, 재난관리팀, 지역안전팀, 토지정보팀을 둔다.

제12조(복지여성국에 두는 과) ①복지여성국에 복지정책과, 여성정책과, 경노제활과, 청소년아동과, 보건위생과를 둔다.

제13조(문화관광환경국에 두는 과) ①문화관광환경국에 문화정책과, 관광진흥과, 체육과, 환경과, 수질관리과를 둔다.

제14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①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를 둔다.